

#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 안<br>번 호 | 2714 |
|------------|------|

2025년 6월 20일  
교 육 위 원 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3일, 이효원 의원 등 17명
2.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효원 의원)

####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음. 특히,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놀이기구에도 빠르게 돌진하는 전동킥보드 등이 제한 없이 난립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기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주·정차를 제한하여 충돌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행위의 제한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안 제5조제3호).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이효원 의원 등 17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714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제5조제3호는<sup>1)</sup> 교육장 및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제5조(행위의 제한)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 동 조문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가목에<sup>2)</sup> 따라 유치원, 학교·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호가<sup>3)</sup>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하나로 흡연·음주 등과 함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하는 행위로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정하고 있는 출입 및 주정차 행위 제한 대상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sup>4)</sup> 따라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되며, 주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로 통칭되는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sup>5)</sup> 등을 의미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만, 페달을 돌릴 때 자동으로 보조 동력만을 제공하는 파스(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속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음.

[그림-1] 개인형이동장치의 주요 유형<sup>6)</sup>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
|-----------------------------------------------------------------------------------|-----------------------------------------------------------------------------------|-------------------------------------------------------------------------------------|
|  |  |  |

○ 한편, 최근 사회 전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판매업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나 공원 등에 방치되거나 주행 중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9년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sup>7)</sup>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 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등을 가결하여<sup>8)</sup>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등을 관리 주체 등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적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더욱이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신이 관할하는 어린이놀이시설

6) 법제처 찾기 쉬운 종합법률정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 전동킥보드 등이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06&ccfNo=1&cciNo=1&cnpClsNo=1> (검색일 2025-06-14)

7) 서울특별시조례 제7165호, 2019. 5. 16., 제정·시행

8)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154호, 윤영희 의원 등 24명 발의, 2024.10.14. 발의)

→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4.12.20.) 의결 후 국회,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에 이송

에서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등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행 방식과 사용자 이용 양태 등에 있어 현행 조례 등이 출입과 주·정차를 제한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내용상 문제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가 놀이권을<sup>9)</sup>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자치 법규에 반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표-1]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등 금지 규정 조례

| 조례명                                                                             | 행위제한 관련 규정                                                                                                                                                                                                                                                                                                                                                                      |
|---------------------------------------------------------------------------------|---------------------------------------------------------------------------------------------------------------------------------------------------------------------------------------------------------------------------------------------------------------------------------------------------------------------------------------------------------------------------------|
| 서울특별시<br>강남구 어린이<br>놀이시설 관리<br>조례(서울특별시<br>강남구조례<br>제1882호,<br>'23.11.3. 개정·시행) |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br>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br>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개정 2023.11.3.><br>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br>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br>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대구광역시<br>어린이놀이시설<br>안전관리 지원<br>조례(대구광역시<br>조례 제6289호,<br>'25.5.20.<br>개정·시행)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br>1.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br>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br>3.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조례명 | 행위제한 관련 규정                                                                                                    |
|-----|---------------------------------------------------------------------------------------------------------------|
|     | 4. 텐트, 그늘막 등 고정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br>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 |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6.4.).<sup>10)</sup>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6.4.)

##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으로 한다.

3.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행위위 제한)<br>1. ~ 2. (생략)<br>3. <u>자동차, 오토바이</u> 등의 출입 및<br>주·정차 행위<br>4. ~ 7. (생략) | 제5조(행위의 제한)<br>1. ~ 2. (현행과 같음)<br>3. <u>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br/>치 등</u> -----<br>4. ~ 7. (현행과 같음) |